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338호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0 0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2
○ 공	고 제 1 0 1 호 2017년 세대주명단 작성 비용 공시	4
○ 공	고 제 1 2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5
○ 공	고 제 1 2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2
○ 공	고 제 1 2 7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7
○ 공	고 제 1 2 9 호 2016년도 이행강제금 채부와 공시송달공고	19
○ 공	고 제 1 3 1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24
○ 공	고 제 1 3 4 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8
○ 공	고 제 1 3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
○ 공	고 제 1 3 7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4
○ 공	고 제 1 4 4 호 2017년 제1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49
○ 공	고 제 1 4 9 호 2017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52
○ 공	고 제 1 5 0 호 2017년 평생학습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공고	62
○ 공	고 제 1 5 5 호 2017년 1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73
○ 공	고 제 1 5 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74
○ 공	고 제 1 5 9 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우체국)사업 공사완료 공고	76
○ 보 건 소 공 고 제 9 호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79
○ 보 건 소 공 고 제 1 0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81

고 시

○ 고	시 제 1 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 1-10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82
-----	--	----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00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 구 간석동 일원에서 시행된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 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4. 사업시행토지 : 632필지(79,677.3㎡)
 - 종전토지 : 631필지(78,582.3㎡, 폐쇄)
 - 존치토지 : 1필지(1,095㎡, 축척변경)
5. 사업완료토지 : 12필지(79,059.4㎡)
 - 확정토지 : 11필지(77,961.0㎡, 시행)
 - 존치토지 : 1필지(1,098.4㎡, 축척변경)

※ 붙임 지번별조서 참조
6. 증감내역 : 감620필지(감617.9㎡)
7. 시 행 일 : 2017. 1. 16.
8.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토지 면적 집계표(지목별)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구역	지 목	필지 수	면적(㎡)	비 고
간석동	대	2	61,120.1	
	도로	1	11,402.7	
	주차장	1	1,763.7	
	공원	4	3,411.3	
	종교용지	3	263.2	
합 계		11필지	77,961.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01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 하고자 합니다.

2017. 1.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 복사용지(A4 1매당) : <u>70원</u> ○ 라벨용지(A4 1매당) : <u>190원</u>	○ CD : (<u>500원</u> × CD개수) + (<u>25원</u> × 면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2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15.11.19.)이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032-453-2192) 또는 FAX(032-453-218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453-2192, FAX 453-21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15.11.19.)이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안 본문)

☐ 본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15.11.19.)이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안 본문)

☐ 본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20호, 2015.11.11., 일부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1.>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2015.11.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 2015.11.19., 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 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청원경찰 징계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032-453-2192) 또는 FAX(032-453-218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453-2192, FAX 453-21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청원경찰 징계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규정) ----- ----- -----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 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27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1.16. ~ 2017. 1.31.(15일간)
3. 공시대상 : 별 첨 참 조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 번호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1,2차)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견인 일자	보관 장소	연락처
1	545	49우7839 (번호판영치)	뉴아반떼XD (NEW AVANTE XD)	승용 중형	김*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길 *, ***호(고잔동, 대명하이빌)	16.12.13. (반송)	16.12.26 (반송)	기타	논현동 14단지 통일동산 앞	2016- 12-30	기전 폐차 사업소	032- 814- 4400
2	728	52허6005	로체	승용 중형	(주)가그린 렌트카	인천광역시부평구경원대로****번 길*(부평동)	16.12.12. (반송)	16.12.26. (반송)	기타	고잔동 257-48	2016- 12-30	기전 폐차 사업소	032- 814- 4400
3	751	48서1309	누비라1.5	승용 소형	N***EN VAN TRUNG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번길 **, 남동공단 ***B **L(고잔동)	16.12.12. (반송)	16.12.26. (반송)	기타	남동대로에서. 남동대로 155번길로 우회전하여 20 미터지점 우측 도로변주 차구역	2016- 12-08	서울 폐차 사업소	032- 442- 6660
4	755	31다3206	아우디A6 2.6E	승용 대형	안*실 (성원 자동차) *상품용*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번지 B-***/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번지 *호 *담빌라 ***	16.12.12. (반송)	16.12.26. (반송)	기타	만수동 934-1 앞	2016- 12-08	서울 폐차 사업소	032- 442- 6660
5	757	58나1800	체어맨	승용 대형	김*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나길 **-*(천호동)	16.12.12. (반송)	16.12.26. (반송)	기타	서창동 666-5	2016- 12-06	서울 폐차 사업소	032- 442- 6660
6	760	21다9861	마티즈	승용 경형	T*NG VAN T**N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 *층 ***호(이동)	16.12.12. (반송)	16.12.26. (반송)	기타	만수동 874-2	2016- 11-30	기전 폐차 사업소	032- 814- 4400
7	761	03누8536	트라제XG	승용 중형	김*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천호동)	16.12.12. (반송)	16.12.26. (반송)	기타	서창동 666-5, 666-4	2016- 12-02	기전 폐차 사업소	032- 814- 440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이행강제금 채부과를 위한 과년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 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채부와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채부과 통보
(201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2.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1.(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유자 (관리자)	주소지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소재지	위반내용	
1	고*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3동 1310호 (항동7가, 비취맨션)	서창동 556번지 6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42.96㎡)	627,210
2	권*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9길 6-4 (신길동)	논현동 651번지 7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51.23㎡)	2,632,960
3	김*자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4-14, 401호 (논현동)	논현동 589번지 27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85㎡)	635,370
4	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3-1, 702호 (구월동)	논현동 591-11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318㎡)	1,188,520
5	김*술	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123-49 402동 505호 (생연동, 에이스아파 트)	논현동 591번지 20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06㎡)	3,007,600
6	김*성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38-12 503호 (구월동, 제니스빌3 차)	구월동 1108번지 7호 제503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9.13㎡)	313,330
7	김*수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6 (구 월동)	구월동 1367번지 15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2.3㎡)	214,320
8	김*수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6 (구 월동)	구월동 1367번지 15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42㎡)	803,250
9	김*경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65 (구월 동)	구월동 1406번지 9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0㎡)	3,740
10	김*중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17, 1115 동 1601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 꿈에그린아파트)	고잔동 462번지 8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48㎡)	4,304,400
11	김*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144번길 87 501동 501호 (산곡동, 현대아파 트)	만수동 889번지 6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4㎡)	324,700
12	김*해	인천시 남동구 성말로53번길 9-13, 602호 (구월동, 영보아이파크)	구월동 1164번지 15호 제602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4.44㎡)	320,790
13	김*연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5-13 401호 (논현동)	논현동 592번지 18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10㎡)	3,139,500
14	김*근	인천시 남동구 복개동로 80 402호 (만수동)	만수동 912번지 3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0㎡)	3,740
15	김*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5번길 73 101호 (선학동)	논현동 592번지 9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85㎡)	635,370
16	김*태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36번길 5-10 303호 (논현동)	논현동 612-1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21㎡)	2,321,620
17	남*현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205번길 19 403호 (논현동)	논현동 590-41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46㎡)	1,091,350
18	문*선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73 (구월동)	구월동 1300번지 10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493,000
19	민*봉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3-12 202호 (논현동)	논현동 667-15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30.3㎡)	2,094,570
20	민*순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38-12 604호 (구월동, 제니스빌3 차)	구월동 1108번지 7호 제604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4.44㎡)	304,750

연번	소유자 (관리자)	주소지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소재지	위반내용	
21	민*기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4-12 402호 (논현동)	논현동 589번지 18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80.52㎡)	1,378,720
22	민*기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4-12 402호 (논현동)	논현동 589번지 18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3㎡)	718,520
23	박*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21, A동 703호 (구월동, 대성파크빌)	구월동 1086번지 8호 외1필지 제703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1.5㎡)	789,330
24	방*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 길 28, 102동 1402호 (송도동, 송 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논현동 652-10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18.3㎡)	1,872,730
25	배*옥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315번길 13-9 401호 (논현동)	논현동 593번지 20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11㎡)	1,620,600
26	서*례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2 , 402호 (논현동)	논현동 589번지 21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90㎡)	1,451,120
27	서*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88번길 9-13, 401호 (논현동)	논현동 591번지 5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29㎡)	1,700,320
28	손*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81번 길 27 101동 405호 (송우리,송우한 국개나리아파트)	논현동 666번지 4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29㎡)	1,342,260
29	신*균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 86, B동 701호(구월동, 해비치빌)	구월동 1098-4 B동 701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8.7㎡)	1,545,550
30	안*신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40번길 22, 202호 (대야동)	만수동 1019번지	무단증축 (위반면적 : 5㎡)	454,750
31	안*복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81번 길 27 101동 405호 (송우리,송우한 국개나리아파트)	논현동 666번지 4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67㎡)	1,342,260
32	안*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85, 202 호 (간석동, 청농빌라)	간석동 508-34번지 502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95㎡)	130,940
33	엄*숙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41-1 801호 (간석동)	간석동 106번지 2호 제502호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 62.68㎡)	1,499,300
34	오*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5번길 73 101호 (선학동)	논현동 592번지 9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85㎡)	635,370
35	유*희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92 1204동 1203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구월동 1199번지 5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1,870
36	유*현	인천시 남동구 장자로 13, 401호 (장수동, 유엔빌리지)	장수동 780-16	무단증축 (위반면적 : 39.67㎡)	5,361,400
37	유*수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청금산2길 1-22	논현동 652-8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55.91㎡)	2,381,520
38	윤*오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250번길 38-1 401호 (논현동)	논현동 590번지 29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68㎡)	2,566,200
39	윤*오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250번길 38-1 401호 (논현동)	논현동 590번지 29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1㎡)	2,321,390
40	윤*식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4-14 401호 히트빌 (논현동)	논현동 589번지 27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85㎡)	635,370

연번	소유자 (관리자)	주소지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소재지	위반내용	
41	윤*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22 102동 1607호 (이촌동, 대림아파 트)	논현동 450번지	무단증축 (위반면적 : 80㎡)	14,960
42	윤*란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30-5, 제401호 (구월동, 아이원캐 슬)	구월동 1086-21번지 401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1.1㎡)	665,160
43	이*용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93번길 26 (남촌동)	남촌동 559번지 10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548,250
44	이*자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22-16, 401호 (논현동)	논현동 589-4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42.74㎡)	2,180,350
45	이*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26-1 102동 302호 (청학동, 상신파크 빌)	논현동 444번지 1호 제112호	무단축조 (위반면적 : 18.9㎡)	353,430
46	이*숙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291-6, 403호 (용현동, 진대빌라)	논현동 592-1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36.2㎡)	2,080,450
47	이*자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205번길 19 403호 (논현동)	논현동 590-41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46㎡)	1,091,350
48	이*근	인천시 남동구 도림로12번길 22-9 , 402호 (도림동, 제이앤에스)	남촌동 330-31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8㎡)	367,200
49	임*재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170번길 12 201호 (논현동)	논현동 612번지 4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2.6㎡)	1,267,520
50	임*선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36 403호 (논현동)	논현동 594번지 15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01㎡)	1,509,950
51	정*태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55-27, 101호(구월동)	간석동 508-34번지 501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9.44㎡)	633,890
52	정*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100, 603동 2302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6단지)	논현동 592번지 34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68㎡)	2,452,800
53	정*선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8번길 9-13, 402호 (논현동)	논현동 591번지 5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29㎡)	1,700,320
54	정*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40번길 18 2동 701호 (옥련동, 삼성아파트)	논현동 592번지 20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16㎡)	3,229,200
55	조*리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59, 1206동 610호 (논현동, 주공아파 트)	논현동 680-1번지 416~418	무단증축 (위반면적 : 23㎡)	1,329,400
56	조*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2로 37, 408호 (운서동)	논현동 594번지 2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02㎡)	3,085,550
57	조*환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3 , 401호 (논현동)	논현동 589-30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44㎡)	3,647,800
58	조*호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2 , 402호 (논현동)	논현동 589번지 21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90㎡)	1,451,120
59	조*호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2 , 402호 (논현동)	논현동 609번지 6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27.58㎡)	1640,670
60	주*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64 102동 904호 (송내동, 부천중동역 푸르지오아파트)	논현동 668-3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70.9㎡)	915,730

연번	소유자 (관리자)	주소지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소재지	위반내용	
61	진*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21-1, 404호(원곡동)	논현동 654번지 8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46.49㎡)	1,177,410
62	차*정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84, 109동 3002호 (주안동, 더월드스튜디오아파트)	논현동 594번지 8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06.56㎡)	3,155,200
63	차*정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84, 109동 3002호 (주안동, 더월드스튜디오아파트)	논현동 594번지 8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4㎡)	2,653,020
64	채*선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152-22 3층 (논현동)	논현동 609번지 8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73.45㎡)	1,103,580
65	최*례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15 401호 (논현동)	논현동 589-2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51㎡)	1,153,260
66	최*례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15 401호 (논현동)	논현동 589-2	무단증축 (위반면적 : 34㎡)	1,879,220
67	한*희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41-1, 제 801호 (간석동)	간석동 170-27번지 801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3.52㎡)	859,020
68	한*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72 208동 202호 (청천동, 금호타운)	논현동 658번지 5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89.84㎡)	4,456,290
69	한*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72 208동 202호 (청천동, 금호타운)	논현동 658번지 13호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289.84㎡)	4,456,290
70	한*주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38-12 503호 (구월동, 제니스빌3차)	구월동 1108번지 7호 제503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9.13㎡)	313,330
71	한*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20-21, B동 501호 (구월동)	구월동 1103번지 7호 외1필지 제501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2.04㎡)	869,890
72	함*철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551번길 26, 702호 (구월동, 해비치빌)	구월동 1109번지 18호 외1필지 제702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4.29㎡)	309,950
73	홍*선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551번길 26, 503호 (구월동, 해비치빌)	구월동 1109번지 18호 외1필지 제503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5㎡)	36,120
74	홍*무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100번길 54, 505호(남촌동, 삼호아파트)	남촌동 312번지 17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9㎡)	237,150
75	황*철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15 401호 (논현동)	논현동 589-2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51㎡)	1,153,260
76	황*철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15 401호 (논현동)	논현동 589-2	무단증축 (위반면적 : 34㎡)	1,879,220
77	황*자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156, 106동 302호 (죽향동, 죽향아파트)	장수동 75-1	무단증축 (위반면적 : 71.5㎡)	3,494,56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3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17. 1.17. ~ 2017. 2.17.(31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 2.17.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18도9952 외 20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이전)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직권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 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서울영등포 아5197	(레전드R) 이륜차	조*진	8408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길 *, ***호(신길동, ***** 오피스텔)		해당사항없음 (2012.12.24. 자진 폐지)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650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이륜차	미상	논현동 590-46	2016-12-06	기전 폐차사업소	814-4400
2	653	등록번호판없음 (서울영등포구5197)	이륜차	이륜차	조*진	간석동 225-324 주차장 내	2016-10-25	기전 폐차사업소	814-4400
3	661	18도9952	마티즈 1.0 DOHC	승용 차량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	구월아시아드선수촌2단지 지하2층 201동 앞	2016-11-03	서울 폐차사업소	442-6660
4	664	25주7005	그랜저XG	승용 차량	김*일	만수1동 963 우미빌라 앞	2016-11-02	서울 폐차사업소	442-6660
5	670	27무3304	EF쏘나타	승용 차량	김*주	간석동 57-4	2016-10-31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6	579	91구3025	봉고프런티어	화물 소형	황*중	도림동 벽산블루밍아파트 후문 옆 주차구획선 내	2016-10-31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7	685	22주7588	카렌스LPG	승용 차량	조*훈	간석동 241-2 양지공원 앞 주차구획선 내	2016-11-03	기전 폐차사업소	814-4400
8	699	94거6118	코란도밴	화물 소형	윤*구	만수1동 963 우미빌라 앞(도로변쪽)	2016-11-15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9	705	80러3414	코란도-밴	화물 소형	(주)로그이	간석4동 경원대로 978번길 617-5	2016-11-15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10	706	인천31러9228	아반떼	승용 소형	권*영	간석4동 인천남고등학교 후문 도로	2016-11-15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11	709	13고9519	엑센트	승용 소형	오*환	간석4동 31번길 576-4번지 도로	2016-11-15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12	720	15서4862	그랜저XG	승용 대형	김*세	간석동 약사사 주차장	2016-11-21	서울 폐차사업소	442-6660
13	722	49두9401	원스톡2.0SCD 2WD AT 7인승	승용 대형	서*건설(주) 서진호	간석동 약사사 주차장	2016-11-21	서울 폐차사업소	442-6660
14	723	86서2062	코란도-밴	화물 소형	심*은	간석동 약사사 주차장	2016-11-21	서울 폐차사업소	442-6660
15	730	62러3900	마티즈	승용 소형	유*웅	간석동 약사사 주차장	2016-11-21	서울 폐차사업소	442-6660
16	739	38가5834	EF쏘나타	승용 대형	이*범	범마을 논현2단지 206동 왼쪽끝 화단 근처	2016-11-24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17	747	86러3965	포터초장축슈 퍼캡	화물 소형	박*환	논현휴먼시아3단지 316동 320동 사이 지상주차장	2016-11-24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18	764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이륜차	미상	간석동 909-7 파라다이스상가 본가설령탕 앞 인도위	2016-12-16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19	766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이륜차	미상	논현동 1306동 옆 큰도로 인도 위	2016-12-16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20	771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이륜차	미상	남동구 장수동 684-2 장수교	2016-12-16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21	772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이륜차	미상	구월동 645-7	2016-11-28	인천 폐차사업소	814-7077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6-76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12월 16일 - 방치장소 : 간석동 909-7 파라다이스상가 앞 인도 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6-76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12월 16일 - 방치장소 : 논현동 1306동 옆 큰도로 인도 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6-77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12월 16일 - 방치장소 : 남동구 장수동 684-2 장수교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6-77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5대)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11월 28일 - 방치장소 : 논현동 및 소래포구 일원(도시경관과 대집행 건)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시정촉구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명령
2. 공고기간 : 2017. 1. 17 ~ 2017. 1. 3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 불임 참조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증빙자료(시정 전·후)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고발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유자 (관리자)	주소지	위반사항		미배달 사유
			소재지	위반내용	
1	임*식	인천시 연수구 신송로118번길 6, 108동 2201호(송도동, 풍림아인원 APT)	고잔동 630번지 산업용품상가 A동 103호 및 104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0㎡)	폐문부재 등
2	배*임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235, 1001동 2804호(논현동, 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고잔동 630번지 산업용품상가 A동 108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3	황*식	인천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312동 1602호(경서동, 청라제일풍경채)	고잔동 630번지 산업용품상가 A동 110호 및 111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0㎡)	폐문부재 등
4	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12동 301호 (부평동, 동아아파트)	고잔동 630번지 산업용품상가 A동 113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5	정*진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17, 104동 1402호 (주안동,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	고잔동 630번지 산업용품상가 A동 128호 및 129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0㎡)	폐문부재 등
6	김*복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70, 205동 903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2단지APT)	고잔동 630번지 산업용품상가 A동 145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3.25㎡)	폐문부재 등
7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7, 1120동 1202호 (논현동, 예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소래논현도시개발지구11블럭)	고잔동 630번지 산업용품상가 B동 117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8	나*영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175, 201동 1604호(부개동, 신명보람아파트)	고잔동 630번지 산업용품상가 B동 121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9	이*남 김*주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128번길 30 (용현동)	고잔동 631번지 산업용품상가 C동 136호 및 137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0㎡)	폐문부재 등
10	민*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50, 530동 204호 (목동, 목동신신가지아파트)	고잔동 631번지 산업용품상가 C동 140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11	박*순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73-65, 102동 1109호 (홍문동, 상우아파트)	고잔동 631번지 산업용품상가 C동 142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12	예*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98, 605동 1203호 (논현동, 예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고잔동 631번지 산업용품상가 D동 103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13	최*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8, 807동 903호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8단지)	고잔동 631번지 산업용품상가 D동 107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14	한*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1길 54, 103동 1104호 (염창동, 강변코아루아파트)	고잔동 631번지 산업용품상가 D동 135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15	이*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231, 403호 (서창동, 해오름)	고잔동 631번지 산업용품상가 D동 144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0㎡)	폐문부재 등
16	김*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163번길 9 (유방동)	논현동 450번지 1단지공구상가 7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20㎡)	폐문부재 등
17	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58, 5동 205호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논현동 450번지 1단지공구상가 10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3㎡)	폐문부재 등

연번	소유자 (관리자)	주소지	위반사항		미배달 사유
			소재지	위반내용	
18	이*삼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121, 311동 406호(산곡동, 현대아파트)	논현동 450번지 1단지공구상가 105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6㎡)	폐문부재 등
19	김*숙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264, 104 동 2703호(석우동, 동탄예당마을 대 우푸르지오아파트)	논현동 450번지 1단지공구상가 133호 및 134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12㎡)	폐문부재 등
20	최*화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84, 126 동 1604호 (주안동, 더월드스테이 트아파트)	고잔동 256-5번지 2단지공구상가 103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5㎡)	폐문부재 등
21	전*영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7-7, 715 동 603호 (정왕동, 시흥배곧 에스 케이뷰)	고잔동 256-5번지 2단지공구상가 107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5㎡)	폐문부재 등
22	이*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7, 129동 1903호 (연희동, 힐데스하 임)	고잔동 256-5번지 2단지공구상가 109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5㎡)	폐문부재 등
23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8, 709 동 2202호 (논현동, 새터마을신일 해피트리)	고잔동 256-5번지 2단지공구상가 110호	무단증축 (위반면적 : 5㎡)	폐문부재 등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환경부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2012.11.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입각한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 필요

2.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개정 (안 제9조제3항 [별표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 (월요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청소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6층 청소과(만수동, 남동구청)
- ☎ 453-2565, FAX 453-25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2.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년 3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환경부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2012.11 환경부종량제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입각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제9조 제3항)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별표3]

구 분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인상률
개정 전	120원	180원	300원	600원	1,200원	
2017. 7. 1.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66.7%
2018. 7. 1.	260원	390원	650원	1,300원	2,600원	30.0%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기준 수수료 [별표3]

구 분	부피 (ℓ)		무게(kg)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개정 전	60원		70원	
2017. 7. 1.	100원	66.7%	100원	42.9%
2018. 7. 1.	130원	30.0%	130원	30.0%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2.11)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배출자”를 “다량 배출자”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다방”을
“찻집”으로, “과자점의”를 “과자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건조에 의하여”를 “건조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수거를”을 “수집
·운반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 (제9조 제3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2017. 7.1. 인상	판매 가격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판매 수수료	14원	22원	36원	72원	144원
2018. 7.1. 인상	판매 가격	260원	390원	650원	1,300원	2,600원
	판매 수수료	19원	28원	47원	94원	187원
봉투규격 (가로-세로,cm)		19×22.9	22×26	26×31	33×40	41×49

※ 판매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에 포함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기준 수수료

구 분	무게(kg)	부피(ℓ)
2017. 7. 1. 인상	100원	100원
2018. 7. 1. 인상	130원	130원

※ 음식물류 폐기물 비중 1.0 적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음식료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3. ----- ----- ----- <u>다량배출자</u> ----- ----- ----- ----- ----- ----- ---- 찾집 ---- ----- ----- <u>과자점</u> ----- ----- -----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 대
해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해서-----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

1. 2. (현행과 같음)

3. -----

- 건조의 방법으로 -----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2개월 -----

-----.

③ -----

----- 위한 -----

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집·운반의 중지) ① 수수료를 1월 이상 체납하는 사업장 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음식물류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공동용기 사용 배출지역이나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을 중지할 수 있다.

-----.

- ④ -----

----- 마
련하여야 -----.

제21조(수집·운반의 중지) ① ---
--- 1개월 -----
----- 대해
서-----
----- 수집 · 운반을 ---
-----.

- ② -----

----- 대해서 ---
-----.

[참고 자료]**■ 폐기물 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2. 11)

I.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II.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III.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외의 장소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 방식을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함
-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 선정

IV. 세부 시행지침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방식 선정 원칙

- 배출량은 무게단위로 산정하고, 수수료 요율 차등부과를 위해 후불방식 우선 고려
- 종량제 방식 권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기존 수거체계를 활용하여 단계적 개선이 가능한 방식 선정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비용 절감 및 수수료 상승에 따르는 연차별 비용효과와,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르는 초기투자비용을 분석하여 선정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의 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산정
- 수수료 산정기준은 무게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피단위 종량제 시행시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부피환산계수는 1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
- 특·광역시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시·구·군에 대하여 부피환산계수를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음

나.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frac{\text{종량제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합계}}{\text{종량제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합계}} \times 100$$

- 종량제방식별 봉투, 칩, 납부필증 등의 선납부 수수료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종량제방식별로 산정
- 종량제방식별 단위무게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 kg당 수집·운반·처리비용 x 발생량 x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목표치)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 현재를 기준으로 '13년 말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특·광역시는 '15년까지, 일반 시는 '16년까지, 도·농 통합 시는 '17년까지, 군 지역은 '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달성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 (%)

구 분	'10년 (기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 도시유형별로 상·중·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높게,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는 낮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가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동 가이드라인(안)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민부담률 목표치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낮은 주민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 적정 수수료의 부과는 해당 자치단체별 여건(수집·운반 및 처리)이 다르므로 자치단체별로 원가 산정 후 정하도록 함
- 지자체별 수수료의 편차가 클 경우 주민들 간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광역시자치단체 내의 시, 구 지역은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특광역시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음

-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선납 또는 후납 방식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 요율 차등 부과제를 감안하여 후납방식 우선 고려
- 후납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업소별)로 부과하는 종량제방식을 강구하되 거점 종량제방식 적용지역에는 단지별로 부과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칩 배부(선납제), 수수료 면제(후납제)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37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2017. 1.17. ~ 2017. 2. 1.
2. 강제처리(폐차) 일시: 2017. 2. 1.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남동구 관허 폐차장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붙임문서】 참조
5.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7. 문 의 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담당(☎ 032-453-2825)

무단방치차량소유자및이해관계인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생년월일	대상자주소	저당등록내역	저당권 설정자	주소	방치장소
1	54로7720	마티즈	승용 경형	이*익	3303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번길 **, ***호(토당동, 흥 타운)	을부번호: 4102-2007-012289 설정일자:2007.11.14.	우리캐피탈㈜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번지 *호 **빌딩 *층	간석동 242 (예술로370번길) 양지공원
2	인천 31누4563	레간자2.0 LPG AT	승용 중형	박*옥외1명 (박*리)공채 면제	6407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 로 ***, ***호(산정동)	을부번호: 2801-2001-017180 설정일자:2001.08.14	삼성캐피탈㈜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번지	남동구 고잔동 18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44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여가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명칭 :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7. 3. 2 ~ 6. 30
 - * 사업 준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 2017. 1. 23.(월) ~ 2. 3.(금) (12일간)
- 모집인원 : 총 33명
 - *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이 변경 또는 운영되지 않거나 모집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	모집 분야	인원	비고
지역자원 활용형	폐현수막 활용 마대(바구니) 제작 및 재활용품 수거·선별	5	근무지 : 재활용폐기물 선별장(남촌동)
지역기업 연계형	중소기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중소기업 생산품 조립·포장)	16	근무지 : 신월경로당(구월4동)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사업 (시설 및 물품 관리 등 운영 지원)	1	근무지 : 만부커뮤니티센터(만수2동)
서민생활 지원형	다문화가정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2	근무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수동)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지원	1	근무지 : 남동하모니센터(논현동)
지역공간 개선형	공공주말농장 운영	5	근무지 : 공공주말농장(남촌동)
	소래로 및 주요도로 꽃길 조성	3	근무지 : 양묘장(서창동), 작업현장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아래 대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음 >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②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 ③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⑧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⑨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⑩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⑪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6,470원으로 하고 주 5일 근무 시행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

○ 참여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net.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사업 내용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 453-5983
- 접수 절차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전화번호	주민센터	전화번호
구월1동 주민센터	☎ 453-5220	만수3동 주민센터	☎ 453-5420
구월2동 주민센터	☎ 453-5240	만수4동 주민센터	☎ 453-5440
구월3동 주민센터	☎ 453-5260	만수5동 주민센터	☎ 453-5460
구월4동 주민센터	☎ 453-5280	만수6동 주민센터	☎ 453-5480
간석1동 주민센터	☎ 453-5300	장수서창동 주민센터	☎ 453-5500
간석2동 주민센터	☎ 453-5320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 453-5520
간석3동 주민센터	☎ 453-5340	논현1동 주민센터	☎ 453-5560
간석4동 주민센터	☎ 453-5360	논현2동 주민센터	☎ 453-5540
만수1동 주민센터	☎ 453-5380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 453-5580
만수2동 주민센터	☎ 453-5400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49호

2017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관내 평생교육기관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구민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남동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와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 1.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응모(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평생학습기관 (영리법인 및 행정기관 제외)

2. 지원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17. 3 ~ 11월
-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 사업대상 및 지역 : 남동구민 및 남동구 내 프로그램 운영에 한함
- 공모분야 : 3개 분야(주민참여확대,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통합)

사업분야	프로그램 내용
주민참여확대	• 인천 및 남동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 지역사회 참여 및 평생교육 자원활동 프로그램 • 주민의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며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 자격증 취득, 경력 개발 등 직업·기술 전문교육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준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개인의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통합	•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프로그램

※ 제외대상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기관(단체)의 총회, 행사 등 운영비 성격의 내부 사업
- 프로그램 수혜자의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 지원 사업
- 일회성 프로그램 (유명인사의 특강 등), 여행성 사업
-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프로그램 당 2,000~6,000천원 범위 내
- 지원범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재료비 등)
 - 성과발표회 참가, 자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 ※ 자산취득, 시설비, 기관운영비, 식대 등 업무추진비는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자부담(대응투자) 비율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지원액은 신청액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1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 사업계획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사본 1부
- 최초 신청기관의 경우 사업추진 관련 증빙 실적 첨부
- ※ 서식은 남동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7. 1. 20(금) ~ 2. 3(금) (평일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제출(신청서류 이메일 별도 전송/ really0602@korea. kr)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남동북지관 3층 평생학습관)

6. 심의 및 통보

- 심의방법 :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기준 :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실효성, 독창성 및 공익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 수행능력,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등
- 결과통보 : 남동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게시

7. 보조금 교부, 사업 평가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 보조금액에 근거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 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평가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시기 :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 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 조치

8. 지원사업 일정

- 접수기간 : 2017. 1.20 ~ 2. 3
 - 선정 결과 통보 : 2017. 2. 13
 - 사업실무자 간담회 : 2017. 2. 15
 - 보조금 교부 : 2017. 2. 23
 - 지원사업 종료 : 2017. 3 ~ 11월 이내
 - 최종 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 ※ 지원사업 신청접수 후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 기관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신청서의 계획과 실제 내용 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선정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선정에 따른 제반 사항은 남동구가 정한 기준 및 규정에 의함
- 문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453-6056)

2017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사업(프로그램)명					
공모분야 (해당번호에 V표시)		☐ 주민참여확대 ☐ 직업능력개발 ☐ 지역사회통합			
총 사 업 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법인(단체) 등록사항		등록명, 등록번호		대표자	
신청 사업 내용		○ ○ ○ ○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대표전화	☎(032)		팩 스	
	실무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2017년도 남동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명

직인

- 붙임 1. 기관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남동구청장 귀하

기 관 (단 체) 소 개 서

[○○○ 기관(단체)명]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		
	○ 전 화 :	○ 지원사업담당 :	
	○ FAX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00.00.00 ○○○ 창립 ○ '00.00.00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명	○ 직원수 : 명 ○ 평생교육사수 : 명	
기구현황	※ 작성예시 <pre> graph TD A[이사장] --> B[상임이사] B --> C[사무국장] B --> D[지역본부] C --> E[총무] C --> F[기획] C --> G[모니터] C --> H[홍보] </pre>		
2017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2017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평생교육 사업을 간략히 기재 ○ ○		

2017년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공모분야 :

3. 사업목적

4. 사업(프로그램) 운영계획

☐ 사업의 필요성

☐ 프로그램 내용

☐ 운영체계 및 전략

- 사업운영 전담인력, 강사 구성
- 학습자(회원) 관리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학습자 모집 계획, 홍보전략 등

☐ 사업대상 및 인원 :

☐ 사업추진 기간

2017년 월 일 ~ 월 일 [프로그램운영시간 : 총 시간]

☐ 프로그램 운영일정

회차	일 정	장소	세부 추진 내용	비고
1	월/일/시간		◦	
2				
3				
4				
5				
6				

5. 사업예산 집행계획

◦ 사업비 구성현황

계(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비 고
원	원(%)	원(%)	

※ 자부담 비율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사업비 집행계획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세부적으로 기재)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강 사 료				○ ○
홍 보 비				○ ○
교 재 비				○ ○
재 료 비				
기타 운영비				

※ 보조금 심의시 보조금액이 조정될 경우, 자체부담으로 충당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등

기 관 명	대표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참여자 부담금 등 (수강료, 교재 등) 상세하게 기재	

7. 기대효과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남동구청은 평생학습 지원사업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 및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남동구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자료로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이동전화, 이메일 등), 기관 및 단체 등록사항(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심의절차 관련 자료수집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평가 및 정산

4. 동의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선정에 필요한 기관 및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7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사업비 예산 편성 작성 지침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은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

사무실운영경비, 자산취득경비, 업무추진경비, 행사부대경비 등 제외

· 사무실운영 경비: 소속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경비 : 급식비, 간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시상금 등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불가

⑤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⑥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공통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보조금 지출 기준안

항 목		기 준	기준안	비 고
강 사 료	일반 강사	1. 5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및 전산 등 학원강사 3.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	기본 50천원 초과 20천원	소속직원 지급불가
	보조 강사	1. 단순하게 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실기·실습교육 보조 등)	기본 30천원 초과 20천원	
교재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	실비	
재료비		• 소모성 재료 구입비	실비	
홍보비		• 현수막 (가로 450cm×세로 90cm 기준) • 홍보 전단 등 인쇄비	50천원 (규격에 따라 초과가능)	
행사비		• 차량임차료, 입장료 등	실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편성·집행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50호

2017년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관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습동아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학습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7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신청(공모)자격

- 남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10명 이상의 성인학습동아리
-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월1회 이상)을 하며 주 활동 장소가 남동구인 동아리

※ 사업 제외대상

-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모임이 아닌 강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
- 정규교과과정학교(대학교포함) 소속의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 회원 중 남동구민의 비율이 50%미만인 동아리
- 영리목적,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하는 동아리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를 받는 동아리
- 강사가 주체가 되어 일정 강사료를 받고 운영하는 동아리
- 일회성 행사, 여행성 사업

2. 지원내용

- 사업추진기간 : 2017. 3 ~ 11월
-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일주일 이내
- 총사업비 : 동아리 당 400~600천원 지원

◦지원 세부내용

- 학습활동 과정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 학습동아리 학습활동·발표에 소요되는 인쇄비, 재료비
- 지역사회 환원(자원 활동, 평생학습관련 행사)을 위한 활동비

※ 사업비 지원 제외항목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수경비만 지원하며 기념품·시상금등의 경비와 단체의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식사비, 교통비, 주차비, 회의참석비, 계좌이체 수수료, 사무기기 구입비 등)

3. 제출서류

◦사업(공모)신청서 1부

◦사업 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동아리 회칙 및 활동 증빙자료 1부

(각종 대회, 발표회 등 참여관련 서류 및 활동사진 등)

※ 서식은 남동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http://LLL.namdong.go.kr>)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 2017. 1. 20(금) ~ 2. 3(금)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 신청서류 이메일 별도 제출 (really0602@ korea.kr)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남동북지관 3층 평생학습관)

5. 심의 및 선정결과 통보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평생교육실무위원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를 통한 심의선정

◦선정기준

- 동아리 현황 : 회원의 참여도 및 최근활동 실적 등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참신성, 적합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등

- 사업예산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부담비율의 적정성 등

※ 남동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료 동아리 및 지역사회 환원 계획이 있는 동아리를 우선 선정하며 활동분야별 특성에 따라 안배하여 선정

◦결과통보 : 남동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6. 보조금 교부, 사업 평가 및 정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 성실히행서약서
-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평가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시기 :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 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 조치

7. 지원사업 일정

- 접 수 기 간 : 2017. 1.20 ~ 2. 3
- 선정 결과 통보 : 2017. 2. 13
- 사업실무자 간담회 : 2017. 2. 15
- 보조금 교부 : 2017. 2. 23
- 지원사업 종료 : 2017. 3 ~ 11월 이내
- 최종 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 지원사업 신청접수 후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보조 사업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동아리의 지원금 환수

- 지원금 교부 학습동아리는 남동구의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필수 참석
- 기관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신청서의 계획과 실제 내용 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선정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문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453-6056)

2017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동아리명				
사업명				
동아리 분류	☐ 기초문해교육 ☐ 학력보완교육 ☐ 직업능력교육 ☐ 문화예술교육 ☐ 인문교양교육 ☐ 시민참여교육			
학습동아리	소속기관명/주소	/		
	설립일	년 월 일	회원수	명
	홈페이지/카페			
동아리 대표	성 명		부서/직함	
	TEL		핸 드 폰	
	FAX		E-mail	
모임장소			모임 주기/시간	주기,요일,시간 ex)매주 화,목 8시
동아리 활동내용	◦ ◦			
사 업 비	총 천원	지원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기간	2017년 월 일 ~ 2016년 월 일			

2017년도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2017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사 업 명			
동아리명			
사업목적			
사업배경			
사업기간	2017. . . ~ 2017. . .		
시 간	총()회/ 총()시간		
장 소			
사업대상		회 원 수	총()명
총 사업비	천 원	보 조 금	천 원(%)
		자 부 담	천 원(%)

2. 프로그램 세부계획

일정		주제	주요 내용	강사명	참여 인원(명)	비고
1차	월/일/시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빈칸 부족시 추가하여 작성				

3. 보조금 지출 계획서

지출항목	총 사업비 (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강사비				시간당단가*수업횟수= 총금액	
교재비 (자료집 제작, 교재구입비 등)				1권단가*수강생수 = 총금액	
실습비 (교육재료비 등)				1개단가*수강생수 =총금액	
홍보비 (플래카드, 리플릿 제작 등)				1개단가*수량 =총금액	
운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4. 동아리 회원 명부

연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비고
1						대표
2						총무
3						
4						
5						
6						
7						
8						
9						
10						
11						
...	빈칸 부족시 추가하여 작성					

5. 기대효과 (동아리지원사업 운영 시 기대되는 효과 및 향후 운영계획 작성)

-
-

6. 사업성과 관리계획 (출결관리, 만족도 조사 실시, 각종 활동 참여 계획 등)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남동구청은 평생학습 지원사업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남동구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심사 자료로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이동전화, 이메일 등), 기관 및 단체 등록사항(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심의절차 관련 자료수집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평가 및 정산

4. 동의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선정에 필요한 기관 및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7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사업비 예산 편성 작성 지침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은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

- 사무실운영경비, 자산취득경비, 업무추진경비, 행사부대경비 등 제외
 - 사무실운영 경비: 소속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경비 : 급식비, 간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시상금 등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불가

⑤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⑥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공통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보조금 지출 기준안

항 목		기 준	기준안	비 고
강 사 료	일반 강사	1. 5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및 전산 등 학원강사 3.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	기본 50천원 초과 20천원	소속직원 지급불가
	보조 강사	1. 단순하게 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실기·실습교육 보조 등)	기본 30천원 초과 20천원	
교재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	실비	
재료비		• 소모성 재료 구입비	실비	
홍보비		• 현수막 (가로 450cm×세로 90cm 기준) • 홍보 전단 등 인쇄비	50천원 (규격에 따라 초과가능)	
행사비		• 차량임차료, 입장료 등	실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편성·집행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55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람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자 대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고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7. 1.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람
2. 공고기간 : 2017. 1. 19. ~ 2. 2.(14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제공일자 : 2017. 1. 5 ~ 1. 17
5. 제공받는 자 : 아진전산(주)
6. 제공목적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7.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8.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대상 차량번호, 고지번호, 납부금액, 가상 계좌번호, 생년월일, 단속일자, 위반장소
9.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OCR 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10. 기타 문의사항 : 남동구 교통행정과 (☎ 032-453-289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3호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44-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로(소로3-3호선)
 - 명 칭: 도로(소로3-3호선)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B=0.6m, L=33m, A=9.0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이 * *(인천 남구 주안8동 **아파트 1**동 1***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관계	
계				9	9					
1	남구동구월동	644-9	도	1	1	이**				
2	남구동구월동	644-5	도	1	1	이**				
3	남구동구월동	636-4	도	5	5	이**				
4	남구동구월동	636-5	도	1	1	이**				
5	남구동구월동	638-11	도	1	1	이**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시설물 준공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8.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 장 소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9.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배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5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우체국)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6-47(2016. 5. 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우체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우체국)
 - 명 칭 : 인천서창동우체국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 토지면적 992㎡, 연면적 399.44㎡, 건축면적 399.4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조달사무소)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74
5. 공사완료일 : 2017.1.13.

공 고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7-9호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예정사항(직권말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7. 02. 0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7. 01. 16. ~ 2017. 01. 31. (16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휴게 음식점	2015-0199390	하루 도그카페	이*제	호구포로 201, 1층 114호 115호(논현동)	사업자등록 말소	2015. 10.01.	2017. 02.01.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7. 01. 3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2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7-10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7. 2. 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7. 1. 16. ~ 2017. 1. 3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16 0200237	만남의광장	조*희	문화서로23번길 19, 1층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 12.19.	2017. 02.01.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7-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0호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건설과(☎453-2722)에 비치하고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1.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80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10호선)
 - 명 칭 : 도시계획사업(도로:중로1-10호선)
- 사업규모
 - B=20~23m, L=1,38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도로시설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있음-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행	중로	1	10	20~23	보조 간선	1,380	광3-15	소1-1 만수동	일반 도로	1991 4.15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	장수동	381-5	전	44	-	증) 44	44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2	장수동	381-6	전	50	-	증) 50	5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3	장수동	383-3	전	20	-	증) 20	20	오○○	인천광역시 서구 심 곡동 302 ○○○	서인천농협 연희지점	인천광역시 서 구 가정로353 (신현동)	근저당 지상권	
24	장수동	383-4	도	7	-	증) 7	7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25	장수동	386-12	도	718	-	증) 30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26	장수동	387-6	전	96	-	증) 96	96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27	장수동	388-18	전	21	-	증) 21	21	채○○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501, ○ ○	남인천농업 협동조합(송 도중앙지점)	인천광역시 연 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	
										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근저당	
28	장수동	388-19	전	89	-	증) 89	89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 ○○				
								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 ○○				
29	장수동	389-5	대	2	-	증) 2	2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남인천농업 협동조합(남 촌지점)	인천광역시 연 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 지상권	
30	장수동	389-6	전	94	-	증) 94	94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남인천농업 협동조합(남 촌지점)	인천광역시 연 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 지상권	
31	장수동	389-7	도	2	-	증) 2	2	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남인천농업 협동조합(남 촌지점)	인천광역시 연 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 지상권	
32	장수동	391-3	도	173	173	-	173	인천광역시					
33	장수동	394-1	도	737	737	-	737	인천광역시					
34	장수동	394-13	전	41	-	증) 41	41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5	장수동	395-4	도	1	1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36	장수동	395-6	전	32	-	증) 32	32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7	장수동	397-2	도	17	17	-	1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38	장수동	397-5	도	61	61	-	61	인천광역시					
39	장수동	397-12	도	268	268	-	268	인천광역시					
40	장수동	397-16	도	2,224	2,224	-	2,224	인천광역시					

구 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41	장수동	398-5	도	3	3	-	3	인천광역시					
42	장수동	398-10	도	65	65	-	6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43	장수동	411	차	7,834	0.1	-	0.1	인천광역시					
44	장수동	450-5	도	402	357	증) 45	402	인천광역시					
45	장수동	751-16	도	89	89	-	89	국 (국토교통부)					
46	장수동	751-18	도	197	184	증) 13	197	국 (국토교통부)					
47	장수동	751-19	도	46	41	증) 5	46	국 (국토교통부)					
48	장수동	751-21	도	59	51	증) 8	59	국 (국토교통부)					
49	장수동	751-22	도	2	-	증) 2	2	국 (국토교통부)					
50	장수동	산147-3	임	21	21	-	21	유○○	캐나다국 온타리오 주 토론토시 ○○○	김○○	인천광역시 연 수구 옥련동○ ○○	가등기	
								송○○	인천광역시 동구 창 영동 ○○○				
								김○○	인천 동구 송림동 ○○○				
								최○○	인천광역시 동구 셋 골로 161번길○○○				
51	장수동	산148-1	임	859	479	증) 380	859	인천광역시					
52	장수동	산149-1	임	1,189	661	증) 528	1,18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3번길 ○○○				
53	장수동	산151-10	임	945	171	증) 774	945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인천광역시					

구 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54	장수동	산151-11	임	965	229	증) 736	965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인천광역시					
55	장수동	산151-12	임	1,875	870	증) 1,005	1,875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인천광역시					
56	장수동	산151-13	임	173	27	감) 27	-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인천광역시					
57	장수동	산151-14	임	312	24	증) 288	312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인천광역시					
58	장수동	산169-3	도	2,087	285	증) 1,802	2,087	국 (국토교통부)					
59	장수동	산172-1	임	1,976	1,759	증) 217	1,976	이○○	인천 부평구 부개 동 ○○○				
								인천광역시					
60	장수동	산173-1	임	429	338	증) 91	429	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 동 565 우성아파트 ○○○				
								인천광역시					
61	장수동	산173-2	임	373	306	증) 67	373	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 동 565 우성아파트 ○○○				
								인천광역시					
62	장수동	산173-4	도	1,295	1,221	증) 74	1,295	국 (국토교통부)					
63	장수동	산173-5	도	695	91	증) 604	695	국 (국토교통부)					
64	장수동	산174-4	임	95	95	-	95	국(국방부)					
65	장수동	산174-5	임	335	335	-	335	국(국방부)					
66	장수동	산174-6	임	527	17	감) 17	-	국(국방부)					
67	장수동	산174-8	임	486	486	-	486	국(국방부)					
				43,893	27,452.1	증) 7,219	34,671.1						